

1. 보호구의 지급 등

1. 사업주 등의 의무

(산업안전보건법 제5조, 제38조, 제39조, 안전보건규칙 제32조 1항)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: **안전모**
2.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: **안전대(安全帶)**
3. 물체의 낙하·충격, 물체에의 끼임,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(帶電)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: **안전화**
4.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**보안경**
5.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**보안면**
6.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: **절연용 보호구**
7.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: **방열복**
8. 선창 등에서 분진(粉塵)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: **방진마스크**
9.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: **방한모·방한복·방한화·방한장갑**
10.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·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: **승차용 안전모**

※ 사업주 의무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※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)

2. 근로자의 의무

(산업안전보건법 제6조, 안전보건규칙 제32조 2항)

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※ 근로자 의무 위반 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즉시 부과

